비관세 장벽 모니터링 보고(일본 도쿄지사)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2020.9월)

1. 한국산 이매패 위반 사례 발생

○ 한국산 이매패(바지락, 피조개 등)에 대한 일본 검역소의 명령검사가 8월4일자로 강화된 이후 바지락 및 피조개에서 패독 검출로 인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함

○ 여름철 수온 상승시 주로 발생하는 패독의 기준치 위반 검출로 인한 위반사례가 8월중 7건이 발생하였으며, 9월의 경우 발생 사례는 없음

○ 일본 검역소에서는 한국산 이매패류에 대해서는 당초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한 제품에 대해서는 패독류 검사를 면제해 왔으나, 모든 한국산 이매패류에 대해 명령검사를 발동 조치한 바 있으며, 일본 현지 수입항 도착시 반드시 패독검사를 받고나서 이상 없을 경우에 한해 통관이 허가되고 있음

※ 자료원 :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https://www.mhlw.go.jp/content/11135200/000656219.pdf

□ 시사점

○ aT에서는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대일 수출 이매패류에 대한 일본 현지 수입식품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으로 현지 수입바이어는 일본지역본부 각 지사를 통해 동 제도 적극적인 이용으로 애로 해소

2. 일본 통관 간소화 사전확인 제도 소개

1) 사전확인제도란

○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수입 식품이 일본의 식품 위생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서류 확인을 통해 검역소 DB에 등록시킴으로서 해당제품의 수입 도착시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제도임

○ 제도 등록 신청자는 수출업체 또는 제조업체로 등록이후 매년 실시하는 수입검사가 3년간 면제되는 유용한 제도임

○ 한국은 2011년 김치가 등록된 이후 2020년 현재 11업체 54품목이 등록되어 있음

2) 등록 신청 절차

○ 신청을 희망하는 수출업체(제조업체)는 '사전확인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기입한 뒤, 한국 정부를 통해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에 신청

- 한국 수출업체 → aT(식품수출부) → 농림축산식품부 → 일본정부

○ 신청서 및 공적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증명서 등의 서류제출

- 신청서 및 공장 위생 체크 리스트 및 등록상품 전체 일람표(엑셀표)
- 각 등록희망 품목의 성분표, 제조공정표
- 시험성적검사증명서(각품목별)
  - · 대일수출시 발급받은 시험성적증명서 또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증하는 한국내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
  - · 시험성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후 1년 이내이어야 함

3) 제도 이용 특징

○ 현재 매년 1회 수입업체가 검사를 실시하여 통관시 마다 시험성적증명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 제도 도입시 3년에 1회로 검사서 첨부가 간속화 되고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절감효과와 신속한 통관 효과가 기대됨

○ 성분과 제조공정이 비교적 변화가 없는 제품등록시 메리트가 크며, 한국산 라면류, 껌, 과자류, 장류 등의 품목등록 추진시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됨

□ 담당기관 및 참고자료

○ 문의처

-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수출업체는 aT 도쿄지사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aT 도쿄지사(e-mail : at@atcenter.or.jp)

○ 일본 후생 노동성(운용지침)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yunyu_jizenkakuninseido.pdf

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0. 9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66건이 발생함(식기류 제외)
- 한국산 식품의 위반사례는 삶은 붕장어에서 세균수 초과 및 대장균군 양성위반 1건등 모두 2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14건(21.2%), 냉동식품 등의 세균수 초과 및 대장균군 검출등으로 인한 위생위반이 30건(45.5), 첨가물 위반이 8건(12.1), 루마니아에서 수입된 신선버섯류에서 방사선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되는 위반을 포함한 기타 위반사례가 4건(6.1), 옥수수 등에서 아플라톡신 검출위반 10건(15.2) 등으로 나타남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9월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19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중 위반건수가 제일 높았으며, 각국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

율중 28.8%를 차지함. 잔류농약이 4건, 세균수 초과 등 위생위반 12건, 기타 치아민산 염산염의 성분규격 부적합 등 1건이 발생함

- 잔류농약 위반사례는 신선 마늘쫑, 냉동브로콜리, 냉동오크라에서 발생됨

○ **베트남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베트남산은 냉동과실조정품(JACKFRUIT)에서 대장균군양성위반 등 모두 5건의 위생위반이 발생하였으며, 냉동새우에서 잔류농약 위반이 1건, 기타 야채류에서 1건의 잔류농약 위반등 모두 7건 위반이 발생함

○ **미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옥수수, 건조 무화과, 아몬드 등에서 아플라톡신 검출 위반이 5건 발생하였으며, 냉동 면류에서 대장균군 양성 위반 1건 등 계 6건의 위반이 발생함

○ **이탈리아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피스타치오넛 페이스트 등에서 아플라톡신 검출로 인한 위생위반 3건, 베이커리제품에서 잔류농약 위반 1건 등 모두 4건의 위반이 발생함

○ **인도산 수입식품 위반사례**

- 인도산 고추 조정품(Green Chili Pickle)에서 지정외 첨가제인 TBHQ가 검출되는 위반 3건 등 모두 4건의 위반이 발생함

○ **한국산 수입식품 위반사례**

- 한국산의 경우 냉동 삶은 붕장어에서 세균수 1.3×10^5/g 검출로 기준치 초과 위반 및 대장균군 양성으로 인한 위반 및 건조 오뎅에서 대장균군 양성으로 인한 위반이 각 1건씩 계2건의 위반이 발생하였음

※ 무가열섭취 냉동식품의 세균수 기준치 : 100,000/g 이하

○ **기타국가 위반사례**

- 인도네시아의 경우 스넥과자류에서 시안화합물이 검출되는 위반사례가 1건 발생하였으며, 캐다다의 경우 볶은 아마니가루에서 시안화합물이 검출되는 2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안화합물 위반사례가 증가하였음

- 필리핀의 경우 냉동 삶은 문어에서 세균수 초과 검출로 인한 2건의 위생위반이 발생하였음

<표1>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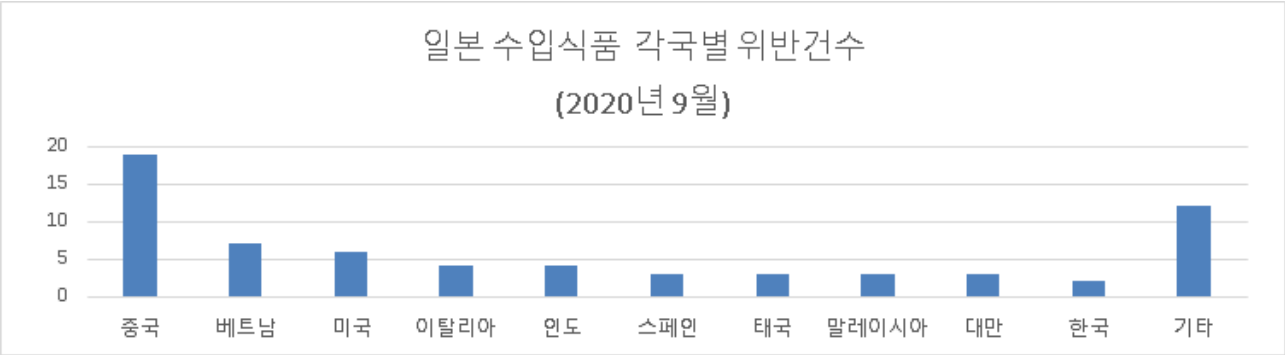

※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

<표2>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

국가명	위반건수	위반율	잔류농약 및 향균제등	아플라톡신	위생	첨가물	기타
중국	19	28.8	4	1	12		2
베트남	7	10.6	2		5		
미국	6	9.1		5	1		
이탈리아	4	6.1	1	3			
인도	4	6.1		1		3	
스페인	3	4.5	1		1		1
태국	3	4.5			3		
말레이시아	3	4.5			1	2	
대만	3	4.5			1	2	
한국	2	3.0			2		
기타	12	18.2	6		4	1	1
합 계	66	100.0	14	10	30	8	4
비율(%)			21.21	15.15	45.45	12.12	6.06

III FTA 이행 이슈 관련

(해당 없음)